

(별표 4)

지 금 대 상	지 금 액	비 고
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·남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	100,000 원	
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	100,000 원	
하수·폐수 및 쓰레기 업무처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	100,000 원	

## 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~ 제3조 (생략)  (신설)	제1조 ~ 제3조 (현행과 같음)  <u>제4조(장려수당)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</u>  <u>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·하수</u>  <u>폐수·쓰레기 업무,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</u>  <u>남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</u>  <u>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</u>  <u>장려수당의 지급액은 (별표4)와 같다.</u>

【 4 】 양주군군세조례증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4. 1. 17.

제 출 자 : 양주군수

제안이유

지방세법 및 동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사항과 다른 법령의 개정등으로 변경된 용어를 발췌 개정코자함.

주요골자

1. “특별징수방법”을 “신고납부와특별징수방법”(안 제16호)
2. “증기”를 “건설기계”(안 제17조 및 제24조)
3. “법 제184조의3 제2항 제7호”를 “법 제184조의3 제2항 제6호”(안 제19조)

양주군조례 제 호

양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

양주군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(납기등) 제2항중 “법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”을 “법 제17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법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”으로 한다.  
제17조(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) 제5호중 “증기”를 “건설기계”로 한다.  
제19조(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) 제1항중 “법 제184조의3 제2항 제7호”를 “법 제184조의3 제2항 제6호”로 한다.

제14조(증기의 대한 신고의무) 중 “증기”를 각각 “건설기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납기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주민세의 징수는 법 제17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 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.</p>	<p>제16조(납기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..... 법 제17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법 제17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 .....</p> <p>.....</p>
<p>제17조(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) (생략)</p> <p>1. -4. (생략)</p> <p>5. <u>증기</u>의 명칭 및 종류, 취득년월일, 등록번호, 등록년월일, 용도</p> <p>6. -7. (생략)</p>	<p>제17조(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건설기계</u> .....</p> <p>.....</p> <p>6. -7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9조(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)</p> <p>① 법 제184조의3 제2항 제7호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.</p> <p>1. -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9조(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)</p> <p>① 법 제184조의3 제2항 제6호 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1. -4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4조(증기의 대한 신고의무)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증기의 명칭 및 종류, 취득년월일, 등록번호, 등록년월일, 용도, 취득가격, 과세사실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증기를 취득한 때</p> <p>2. 증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때</p> <p>3. 국외에서 사용하던 증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때</p> <p>4. 비과세 증기가 과세 증기로 된때</p> <p>5. 과세 증기가 비과세 증기로 된때</p>	<p>제24조(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무) ① 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1. <u>건설기계</u> .....</p> <p>2. <u>건설기계</u> .....</p> <p>....</p> <p>3. 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4. 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5. ....</p>